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9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9. 27.

발 의 의 원 : 김보경 의원, 김정태 의원

1. 제안이유

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활동 지원, 지원 절차,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다. 보고·검사, 지방보조금의 반환, 포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용소방대”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「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.

제3조(활동 지원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지원 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서류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같은 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중복 지원 금지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보고·검사 등)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에 따른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6조에 따른 보고·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포상) 군수는 화재 예방,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(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읍 또는 면에 둔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로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3조(임무) 법 제7조제5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2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
3.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② 지역의용소방대(이하 “지역대”라 한다),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문의소대”라 한다)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22조(경비부담) 시장 또는 구청장·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.

1.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소집수당
2.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·물품 구입비 및 유지·관리비
3.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
4. 의용소방대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
5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
6.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
7.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